

신천엠코아파트~국도7호선(대3-38호선) 연결도로 개설공사(1차) 보상계획 공고

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『신천엠코아파트~국도7호선(대로3-38호선) 연결도로 개설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에 의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그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0월 26일

울 산 광 역 시 장

1. 사업 개요

- 가. 사업 명: 신천엠코아파트~국도7호선(대로3-38호선) 연결도로 개설공사
- 나. 사업시행자: 울산광역시(종합건설본부장)
- 다. 사업 구간: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93-5번지 일원
- 라. 사업 규모: 도로개설(확장) L=0.5km, B= 25~32m

2. 편입 토지 및 물건

- 가. 토지: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93-5번지 일원
※ 사업사정에 따라 편입면적 및 지장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
- 나. 물건: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등 권리관계 일체

3. 보상의 시기

- 2023년 11월 이후(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)

4. 토지·물건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: 2023. 10. 27. ~ 2019. 11. 13.(15일간)

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

-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도로보상팀

【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37 (Tel. 052-229-5841, Fax. 052-229-5839)】

다. 이의신청: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의신청

※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이후 신청 내용은 신청자가 입증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등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

나. 만약,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.

다. 보상장소, 보상금액,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임

6. 기 타 사 항

○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(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받아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)

○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에 의함.